

■ 신청대상자 및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배정 세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이내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청약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구분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추천기관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대구지방 중소기업청 성장지원과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청약통장 구비여부	청약통장 필요 없음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본인이 직접 관계법령 및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를 바라며, 상기자료는 작업 및 편집과정상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